

# 목 차

참 고 서 류 .....	1
I. 권유자·대리인·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.....	2
1. 권유자에 관한 사항 .....	2
2. 대리인에 관한 사항 .....	2
3. 피권유자의 범위 .....	2
4.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.....	2
5. 기타 사항 .....	2
II.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.....	3
□ 이사의 선임 .....	3
□ 감사의 선임 .....	4
□ 정관의 변경 .....	5

# 참고서류

금융위원회 귀중

제 출 일: 2017 년 04월 04일

성 명: (주)서화정보통신

권 유 자: 주 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41-13(관양동,서화빌딩)  
전화번호: 031-345-5100

# I. 권유자 · 대리인 · 피권유자에 관한 사항

## 1. 권유자에 관한 사항

성명(회사명)	주식의 종류	주식 소유 수량	주식 소유 비율	회사와의 관계	비고
(주)서화정보통신	보통주	300,000	2.62%	본인	자기주식

-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

성명 (회사명)	권유자와의 관계	주식의 종류	주식 소유 수량	주식 소유 비 율	회사와의 관계	비고
(주)에스제이 엠홀딩스	최대주주	보통주	2,842,655	24.91%	최대주주	-
김휘중	특수관계인	보통주	659,233	5.78%	최대주주의 최대주주	-
계		보통주	3,501,888	30.69%	-	-

## 2. 대리인에 관한 사항

성명(회사명)	주식의 종류	소유주식수	회사와의 관계	비고
권성규	보통주	8	직원	-
이혁재	보통주	10	직원	-

## 3. 피권유자의 범위

2017년 03월 27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

## 4.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

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

## 5. 기타 사항

가. 위임권유기간 : (시작일) - 2017년 4월 10일, (종료일) - 2017년 4월 19일

나.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

-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
-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
-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(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)
-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(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)

√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

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	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- <a href="http://evote.ksd.or.kr">http://evote.ksd.or.kr</a>
홈페이지의 관리기관	한국예탁결제원
주주총회 소집통지(공고)시 안내여부	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"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"을 안내하였음

다.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: (일시) - 2017년 4월 20일 09시  
 (장소) -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41-13  
 (관양동,서화빌딩) 1층

라.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: (성명) - 권성규, 이혁재  
 (부서 및 직위) - 재무회계팀 /팀장, 과장  
 (연락처)- (031)345-5104

## II.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

### □ 이사의 선임

가. 후보자의 성명 · 생년월일 · 추천인 · 최대주주와의 관계 · 사외이사후보자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장푸 (Zhang Pu)	1982.07.19	아니오	없음	이사회
예마오창 (Ye Maochang)	1973.06.30	아니오	없음	이사회
치엔위진 (Qian Yujin)	1980.01.27	아니오	없음	이사회
총 ( 3 ) 명				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 · 약력 ·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주된직업	약력	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장푸 (Zhang Pu)	청두 Skymoons의 부총재	-중국사천대학 졸업 -상하이Shanda Interactive 청두R&D센터 기획 담당 -청두영롱과기유한공사 R&D총감 -적월과기 CEO	해당없음
예마오창 (Ye Maochang)	상하이 유상과기유한회사 총 경리	-화동컴퓨터기술연구소 컴퓨터조직 및 체계구 조, 석사 -상하이락유정보기술유한회사 총경리 -상하이기원과기주식유한회사 파트너	해당없음

<p>치엔위진 (Qian Yujin)</p>	<p>중국 Wei Heng Lawfirm의 Partner 변호사</p>	<p>-화동정법대학 법학석사 -상하이중위투자자문유한회사, 상하이하이얼 의료과학기술유한회사, 아이스톤인재서비스(상 하이)회사, 난광(상해)국제여행사유한회사(중 양국유기업), 아오유웨이회사, 상하이로란음악 학교, 상하이절대가인, 상하이바우정물류주식 유한회사, 상하이설계의도, 홍콩평마유한책임 회사 연간법률고문 -즈방자산유한책임회사, 상하이컹청투자관리주 식유한회사, 과학교 등 법률고문 -핑안대건강주식유한회사의 입고변호사 -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(썬산반)상장업 무 법률서비스(상하이제성통신과학기술주식유 한회사, 상하이바우정물류주식유한회사, 라오 닝중하이캉생물제약주식유한회사, 라오닝마이 디생물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, 텐진더통전기주 식유한회사, 상하이어우후정보인터넷유한회사, 푸젠난평방화과학기술유한회사) -신민자본, 덩이, 텅원자본의 불량자산처리 및 ABS업무 참여중</p>	<p>해당없음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	-------------

※ 기타 참고사항  
[해당사항없음]

## □ 감사의 선임

<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>

가. 후보자의 성명 · 생년월일 · 추천인 · 최대주주와의 관계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<p>멍쿤 (Meng Kun)</p>	<p>1981.04.12</p>	<p>없음</p>	<p>이사회</p>
<p>총 ( 1 ) 명</p>			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 · 약력 ·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주된직업(현재)	약력	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<p>멍쿤 (Meng Kun)</p>	<p>청두Skymoons 부총재</p>	<p>-University of Waikato (New Zealand) 컴퓨터과학 과 석사 -적월과기 BD</p>	<p>해당없음</p>

※ 기타 참고사항

[해당사항없음]

## □ 정관의 변경

가.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-	-	-

나.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제 2조(목적)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 ~ 34. (생략) 35.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파생사업	제 2조(목적)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 ~ 34. (생략) (현행과 같음) 35.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36.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37. 상표,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38. 저작물 창작 등에 대한 공인 매니저업 39. 영화 및 영상 등 제작업 40. 연예 매니지먼트 관련 서비스업 41.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파생사업	- 사업목적 추가
제 10 조(신주인수권) ① ~ ④ (생략) ⑤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	제 10 조(신주인수권) ① ~ ④ (생략) (현행과 같음) ⑤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	- 단서조항 삭제
제 14 조의 2(전환사채의 발행)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제 14 조의 2(전환사채의 발행)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략) (현행과 같음)	- 제3자대상 발행 사채의 액면총액 증액
제 15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제 15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략) (현행과 같음)	- 제3자대상 발행 사채의 액면총액 증액

<p>제 27 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	<p>제 27 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관의 변경</li> <li>2. 주식의 분할</li> <li>3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</li> <li>4. 영업의전부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</li> <li>5. 등기임원의 해임</li> <li>6. 액면미달의 주식발행</li> <li>7. 기타법령이 정하는 사항</li> </ol>	<p>-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을 ②항에 추가</p>
<p>제 29 조(이사의 수)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이 상으로 한다.</p>	<p>제 29 조(이사의 수)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이 상 7명이하로 한다.</p>	<p>- 이사의 수 상한 설정</p>
<p>제 34 조(이사의 직무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 34 조(이사의 직무) ① ~ ② (생략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회사 및 자회사의 대외투자, 처분, 용자, 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.</p>	<p>- 사전 이사회 승인 안건 추가</p>
<p>제 41 조의2(감사의 수와 선임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</p>	<p>제 41 조의2(감사의 수와 선임) ① ~ ② (생략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	<p>- 단서조항 삭제</p>
<p>부칙(2016.03.18) 제49조(시행시기) 이 정관은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(2017.04.20) 제49조(시행시기) 이 정관은 제28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</p>	

※ 기타 참고사항  
[해당사항없음]